

제1회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회의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11:00 ~ 12:00

○ 회의장소 :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

○ 회의결과

☑ 심의안건 : 2024년 연간사업 계획 평가 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심의내용 :

-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센터명, 센터현황,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표)
-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과정, 세부내용)
- 사업의 반영에 관한 사항 (2024년 사업평가, 2025년 사업반영)
-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목적, 목표, 진행내용, 기대효과, 세부내용, 추진일정, 평가)
- 사업의 자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자원활용)
-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과 후원금,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

☑ 심의안건 : 2024년 연간사업 프로그램 평가 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심의내용 :

-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보호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위생건강교육, 급식지도, 생활안전교육, 안전귀가지도)
-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 수학 · 영어, 예체능활동 : 미술교실 · 체육교실, 적성교육 : 독서교실 · 요리교실, 아동권리교육, 인성교육/환경, 사회성교육/진로, 아동자치회의, 동아리활동/보드게임)
-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영화관람, 키즈카페견학, 놀이동산, 여름캠프, 체육대회)
- 정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아동상담, 보호자상담, 집단상담, 정서지원, 생일잔치, 부모교육, 부모모임)
- 지역사회연계에 관한 사항 (기관연계)

☑ 심의안건 : 2025년 지역사회연계 개발 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심의내용 :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연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 관련단체와 1개 기관, 1개 실적으로 아동서비스와 연계된 활동을 진행합니다.

☑ 심의안건 : 2025년 특성별 지원예산 사용기준 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심의내용 :

- 특성별 예산지원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특화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성별 예산지원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시설 중 해당 사업선정 대상에 지원
- 특성별 예산지원 추가지원 :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월 300,000원
-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대상 : 이용아동 중 토요일봄 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기능역할 : 지역사회의 토요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계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토요돌봄 : (1)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토요 미운영센터 연계지원 (2) 지역사회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를 참조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 ④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⑤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사용기준 : 특성별 지원 예산은 특화 프로그램 집행. 다만, 연장돌봄 및 토요운영에 따라 추가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 2025년에도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사용기준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제수당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급 × 시간외수당(1.5배) × 시간 × 횟수」으로 정하고 남은 부분은 동아리활동 보드게임 활동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심의안건 : 돌봄 필요시간 확인에 따른 운영시간 조정 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심의내용 :

-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였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필수 운영시간을 학기 중 : 14:00 ~ 19:0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를 센터에 보관하고 지자체에 사본 제출하여 보고하되,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 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심의안건 :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변경 안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심의내용 :

제34조(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종사자 인권보호)

- ① 이용자 및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전화음성안내를 시행한다.
-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기간을 보장한다.

<신설 2025. 03. 14>

제44조(문서관리)

- ① 문서는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구두결재 후 담당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서면결재 한다.
- ②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시설장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서면결재 한다.
- ③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문서보관 및 관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한동안 보관한다.
- ④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 사례관리, 종사자 등을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일반문서와 달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하며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 권한 부여는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계획,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결 등을 관리하고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 시스템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시설은 운영전반에 대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⑦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3. 지역아동센터 운영일지
 4. 지역아동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10.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⑧ 문서의 보존기간

1.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는 계속 보관
2. 회계연도가 종료된 예산서 및 결산서, 회계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3. 문서별 보관·비치 기간은 별지1 서식을 확인한다. <신설 2025. 03. 14>

⑨ 자체서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활용하되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이용아동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등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한다. <신설 2022. 12. 13>

[별지 1] 문서별 보관·비치 기간

대상문서	보관기간
시설의 설치,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 지역아동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 지역아동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 종사자 인사기록부 및 채용 관련 서류	준영구
예산 및 물품 관리 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5년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서류 - 지역아동센터 운영일지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 -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퇴소 후 3년)	3년

제48조(재정관리)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및 정부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총계주의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라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신청 및 보고, 후원금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업무 처리하여야 한다.

2.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지출분개장 기입이 원칙이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용 시 매월 마감 후 관련 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정부보조금을 운영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14>

- ☒ 보고안건 : 2024년 결산 보고 건
- ☒ 보고결과 : 원안 가결
- ☒ 보고내용 :

과목				결산액
관	항	목	세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도보조금	냉난방비보조금사업	1,500,000
		시군구보조금	운영비보조금사업	16,608,000
				800,000
			다센터법인보조금사업	3,000,000
			인건비보조금사업	84,750,000
			인건비보조금사업(도비)	8,377,400
			인건비보조금사업(시비)	5,970,990
			토요운영비보조금사업	3,600,000
			급식비보조금사업	63,783,000
			추가급식비보조금사업	3,543,500
			종사자수당보조금사업	6,500,000
			명절휴가비보조금사업	1,573,800
			종사자자격수당	9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	9,873,000
		비지정 후원금	(주) 디엔아이	150,000
			플랫폼김해	350,000
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이자수입	2,013
세입				211,281,703

과목				결산액
관	항	목	세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급여	81,757,000
		제수당	제수당	12,168,68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7,449,220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8,135,54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	4,290,550
		공공요금	공공요금	2,679,580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744,860
		차량비	차량비	2,013,24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750,000
사업비	사업비	급식사업비	주부식비	52,185,760
			관리운영비	13,725,240

과목				결산액
관	항	목	세목	
사업비	사업비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교과학습지도	2,117,100
			예체능활동	1,000,000
			적성교육	1,000,000
			인성교육	2,500,000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사회성교육	1,800,000
			아동자치회의	200,000
			동아리활동	405,120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관람견학	874,500
			캠 프 여행	9,116,700
			공연행사	124,000
		정서프로그램 사업비	정서지원	800,000
			생일잔치	640,000
			부모교육	450,000
			부모모임	1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350,000
		반환금	반환금	3,904,613
세출				211,281,703

- ☒ 보고안건 : 2024년 후원금 집행 보고 건
- ☒ 보고결과 : 원안 가결
- ☒ 보고내용 :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세목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	9,873,000
		비지정 후원금	(주) 디엔아이	150,000
			플랫폼김해	350,000
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이자수입	92
세입				10,373,092

과목				결산액
관	항	목	세목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6,13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	19,87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750,000
사업비	사업비	교육프로그램사업비	인성교육	1,500,000
		문화프로그램사업비	캠 프 여행	7,187,300
			공연행사	124,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350,000
		반환금	반환금	435,792
세출				10,373,092

- ☑ 보고안건 : 2025년 특성별 예산 보고 건
- ☑ 보고결과 : 원안 가결
- ☑ 보고내용 :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세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토요운영비보조금사업	3,600,000
세입				3,600,000

과목				결산액
관	항	목	세목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제수당	3,249,600
사업비	사업비	교육프로그램사업비	동아리활동	350,400
세출				3,600,000

- ☑ 보고안건 :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보고 건
- ☑ 보고결과 : 원안 가결
- ☑ 보고내용 :

과목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관	항	목	세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군구 보조금	운영비	16,608,000	17,208,000	6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비지정 후원금	주식회사 승인	0	3,300,000	3,300,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후)	전년도 이월금(후)	0	350,000	350,000
잡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이자수입	8,400	9,100	700
세입				16,616,400	20,867,100	4,250,700

과목				추경예산액
관	항	목	세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1,200,00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600,000
		사회보험부담금		600,000
	업무추진비	회의비		150,000
	운영비	여비		150,000
		수용비 및 수수료		250,000
		공공요금		60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500,000
사업비	사업비	문화프로그램사업비		200,000
예비비	예비비	반환금		700
세출				4,250,700

-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예산비교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산비교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252,251,170원	256,501,870원	252,251,170원	256,501,870원	▲ 4,250,700원

2025. 03. 14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장

